

##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5. 21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5. 21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5. 23) 상정,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곽소득)

가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에 관한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 
것임

나. 주요골자

조례 제2조(소재지)의 <별표>의 내용 중 사하구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
사하구 보건소 설치 조례에서 보건소의 위치 소재지에 관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가 이중으로  
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임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#### 5. 토론요지 : 없 음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